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655

발의연월일: 2024. 11. 18.

발 의 자:김미애·김형동·최보윤

최수진 • 이달희 • 김정재

주진우 · 강대식 · 백종헌

박준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로당 운영 사업은 2005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국고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다만, 경로당의 양곡 구입비와 냉· 난방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예외를 두어 국고 보조가 이루어져 왔음.

그런데, 향후 정부의 경로당 운영 지원 정책이 부식 구입 및 급식제공인력 지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발표된바,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최근 경로당 식사확대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범위가 개정되어양곡비와 냉·난방비의 보조금 집행 잔액을 부식비 지원에 사용할 수있게 되었으므로, 현행법에도 해당 내용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로당 보조 범위에 부식비와 급식 제공에 필요한 인건비를 추가하고,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자체 노력 으로 절감한 경우 보조금 집행 잔액을 부식 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의 제목 중 "양곡구입비 등의"를 "운영비"로 하고, 같은 조제1항 중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구입비"를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 및 부식(副食) 구입비"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제공에 필요한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④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 본문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31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경로당(경로당을 운영하는 주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자체 노력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비용을 절감하여 교부된 보조금이 결산에 따라 확정된 보조금을 초과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해당 경로당이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이 확정된 회계연도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부식 구입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

- ⑤ 경로당은 제4항에 따른 초과액을 제1항에 따른 부식 구입비에 사용한 경우 사용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용명세서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사용명세서의 내용·통보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보조) ① -----입비 등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 여 예산의 범위에서 <u>양곡(「양</u> ----양곡(「양곡관리 곡관리법 | 에 따른 정부관리양 | 법 | 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곡을 포함한다)구입비의 전부 포함한다) 및 부식(副食) 구입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② (생략) <신 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급식 제공에 필요한 인건 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신 설> 률」 제22조제1항 및 제31조제 2항 본문과 「지방자치단체 보 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 조 및 제31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경로당(경로당을 운 영하는 주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자체 노력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 는 비용을 절감하여 교부된 보 <신 설>

<신 설>

조금이 결산에 따라 확정된 보 조금을 초과하는 경우 「보조 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4항 전단에 따라 해당 경로 당이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 니하고 그 보조금이 확정된 회 계연도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부식 구입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⑤ 경로당은 제4항에 따른 초 과액을 제1항에 따른 부식 구 입비에 사용한 경우 사용한 날 부터 15일 이내에 사용명세서 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사용명세서의 내용・통보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 로 정한다.